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재)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 투찰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및 과업지시서를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본 입찰(견적서 제출)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가. 발주부서 : 기흥구 도로과 도로시설팀
나. 용역명 :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81호 개설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다. 용역위치 : 기흥구 상하동 271-6번지일원(진흥APT입구사거리~동백역)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역내용 : 기흥구 관내 임목폐기물 집적 및 상처, 운반·처리
바. 기초금액 : **금89,13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비에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접수개시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7. 29.(수) 10:00	2026. 8. 4.(화) 10:00	2026. 8. 4.(화) 11:00	입찰집행관 PC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서 제출기간동안 입찰서의 제출은 24시간 가능합니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을 숙지하시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입찰)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용인시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 업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참가자격 다음장 계속)

※ 단, **다**의 어느 하나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서 규정하는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스스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 (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비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의견을 따릅니다. (기흥구 도로과 도로시설팀)

라. 공동계약

- 1)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가·다**'해당업체로 합니다.
-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의 **가·나·다**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분담사**는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의 **가·나**를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3) 공동수급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4) 입찰서(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은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5)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르며, 업체 **참가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전자)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8. 3.(월) 18:00까지**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기명·날인)를 작성하여 계약시 원본을 제출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서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상기에규 <별표1>의『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천프로그램)에 따라서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 및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붙임2]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본 용역은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안내 및 서약서 제출사항

-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 가. 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혹은 카드영수증, 지급대장, 사진 등)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 가. 계약상대자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시방서(설계설명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라. **대금 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마.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바.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기흥구청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6193-6043)**
 - 용역 및 설계서 열람에 관한 사항 : **기흥구청 도로과 도로시설팀 (☎031-6193-6421)**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견적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감사관실 ☎031-6193-2104)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 엄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용인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안내공고합니다.

2026. 7. 28.

용인시 기흥구 재무관

[붙임1]

■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